

자성대노인복지관(센터) 운영위원회 2019년 3분기 회의록

결 재	담당	과장	관장
	/		

일 시	2019. 9. 26.(목) 11:20~13:00	장 소	석화한정식(범일동)
진 행	이은숙(시설장)	작 성 자	김현경(간사)
참 석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명 중 7명 참석 -참석자: 위원 이수봉, 박명순, 이기영, 최만철, 김영옥, 이은숙, 간사 김현경(7명) -불참자: 위원장 전수혜 		
주요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안건 : 1. 2019년 4분기 주요사업 계획 2. 운영규정 개정(6차) ○ 보고안건 : 1. 2019년 3분기 사업 추진 실적 보고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말: 이은숙 위원 금일 전수혜위원장님 건강 상 이유로 부득이 불참 양해말씀 드림.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이은숙 위원 8명의 위원 중 7명 과반수 이상 참석함으로써 2019년 3분기 자성대노인복지관·센터 운영위원회 성립 및 개회 선언. ○ 전자 회의보고: 김현경 간사 6월 25일에 개최된 2019년 2분기 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다.(회의자료3p) ○ 보고사항: 김현경 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관 회원 및 이용자 현황 보고(회의자료4p) 2. 2019년 3분기 사업 실적 보고(회의자료5p~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만철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중 우리환경지킴이는 어떤 일을 하는지, 활동 중 음주 등 주민들이 보기 부적절한 모습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 참여자 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을 당부함. -이은숙 위원: 청소 등 환경미화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단에 팀장을 선임하여 일자리전담사회복지사와 함께 참여자 관리에 힘쓰고 있음. -김영옥 위원: 일자리수행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 복지지원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김현경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당초 200명에서 시작해서 현재 660여명으로 참여자 뿐만 아니라 수혜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모든 인원을 관리하기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음. -이은숙 위원: 일자리 예산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어 사업량을 어느정도 늘려야 하는지 항상 고민이 됨. -김영옥 위원: 일자리사업은 소득 창출의 기능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 사회참여 기능이 함께 존재하지만 이해 못하는 주민들로 인해 근로시간 중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도 함. -이기영 위원: 프로그램 추천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는지 묻다. -이은숙 위원: 인기강좌에서 추천에 탈락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강사 협의 후 정원을 조금씩 늘려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선착순처럼 새벽부터 나오는 일은 없어졌음. -이은숙위원: 2019년 3분기 사업 실적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보고받기를 동의하다. 		

회의내용

- 이수봉위원 외 전원: 동의하다.
- 이은숙위원: 보고안건이 가결되었음을 공포하다.

○ 심의사항: 김현경 간사

1. 2019년 4분기 주요 사업 추진 계획(회의자료10p~13p)

- 작품발표회 실시
- 김장김치나눔행사 실시
- 자원봉사.후원자 송년의 밤 행사
- 노인일자리사업 평가대회 수상 및 직원 표창 계획
- 한국마사회 동구지사 공모사업 '경로식당 양곡지원사업' 시행
- 혹한기 대비 겨울나기물품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에 따른 사업 준비

2. 운영규정 개정(회의자료14p~17p)

- 인사관리, 제2장 임용과 시험, 제7조(제출서류) 일부 개정
- 인사관리, 제6장 퇴직, 제41조(정년퇴직) 일부 개정
- 복무관리, 제2장 근무시간, 제13조(시간외근무등) 일부 개정
- 복무관리, 제3장 휴직, 제15조의 1(육아휴직) 일부 개정 및 제15조의 2(가족돌봄 휴직등) 추가
- 복무관리, 제3장 휴직, 제17조(휴직의 효력) 일부 개정
- 복무관리, 제4장 휴가, 제25조(특별휴가) 일부 개정
- 복무관리, 제7장 교육안전, 보건 및 직원복지, 제35조 1(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35조 2(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추가
- 이기영위원: 요즘 사회분위기가 개인정보, 근로기준법 강화 등 조치나 권고사항들이 많음. 운영규정 내 시간외수당의 경우 다른 기관들도 사정이 비슷한 것인지?
- 이은숙위원: 주 근무시간이 연장근로까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보조금사용이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초과수당보다는 대체 휴가를 주고 있는 실정임. 토요일 휴일근로수당은 당직제에 따른 정액제가 아닌 연장근로의 개념으로 2020년부터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려고 함. 대체휴가는 휴일대체, 혹은 보상휴가 방법으로 직원들의 동의 하에 시행할 계획.
- 이은숙위원: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10월에 해당 직원이 있어 운영규정 개정 전이긴 하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10일을 쓰려고 하는데 해당되는 것이지 묻다.
- 김영옥위원: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 이은숙위원: 2019년 4분기 주요 사업 계획과 운영규정 개정(6차)에 대한 심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함을 말하다.
- 이수봉위원 외 전원: 동의하다.
- 이은숙위원: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공포하다.

○ 논의사항: 김현경 간사

1. 시설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변경

- 김현경간사: 현재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전수혜위원장님이 위촉되어 있으나 면접관으로 참석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투명한 절차를 위해 참석 가능한 외부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선출하고자 함.
- 이은숙위원: 직원채용 시 채용 과정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가까이 소재하고 있는 분이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최만철위원에게 인사위원회 위원직을 요청함.

회의내용	<p>-최만철위원: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발생할 시에만 참여하는 것이라면 가능함. -전위원: 인사위원회에 최만철 위원 위촉에 동의하다.</p> <p>2. 경로식당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 논의</p> <p>-김현경간사: 타구 주민들의 유입으로 과밀집 현상을 완화하고 타 복지관과의 평준화를 위해 경로식당 이용료 일반 1,500원에서 2,000원,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에 대해 동구노인복지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함.</p> <p>-이은숙위원: 10년 이상 동결된 강사수당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평지에 입지조건이 좋아 신규이용자 60%가 타구노인일 정도로 지하철 타고 많이 오심. 동구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위해서라도 타구 유입을 방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p> <p>-박명순위원: 타구 가입 제한을 두는 방법이나 동구노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법은 어떤지.</p> <p>-이은숙위원: 시비가 70%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구를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식대와 수강료를 현실화하면 자연적으로 타구 이용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음.</p> <p>-이기영위원: 현재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인상 후 타구 이용률을 통계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음.</p> <p>-이은숙위원: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겠음.</p> <p>-김영옥위원: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는지</p> <p>-이은숙위원: 동구노인복지관과 의논하여 회원 공청회 및 구청 보고 후 2020년부터 계획함.</p> <p>-박명순위원: 인상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식단가도 1,500원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봄. 프로그램 수강료도 10,000원에서 12,000원 하는 것보다 분기 과정을 4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p> <p>-이은숙위원: 현재 식단가가 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500원 수입금과 부족분은 후원금품으로 채우며 식당 질을 높이고 있으나 후원사정에 따라 운영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 안정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함.</p> <p>-이수봉위원: 다른 복지관에 다녀봐도 2,000원이 기본임. 예산을 더 내려주지 않는다면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p> <p>-이은숙위원: 식대 및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에 대해 동의함을 말하다.</p> <p>-이수봉외 전원: 인상 안건에 대해 동의하다.</p> <p>-이은숙위원: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공포하다.</p> <p>○ 폐회</p> <p>-이은숙위원: 이상으로 2019년도 3분기 운영위원회 폐회를 알리다.</p> <p>-전체: 동의하다.</p>
회의결과	<p>1. 보고사항: 제출된 자료와 같이 보고받기를 동의함. 2. 심의사항: 전원 가결로 승인함.</p>
활동사진	